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-70호

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15호(2007.4.20)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, 종로구고시 제2007-30호(2007.6.29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3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사업시행면적 : 5,443.5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 : 성윤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대표이사 함재우

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-2 우덕빌딩 17층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0. 11. 29.
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

가. 변경주요내용

1) 사업시행변경인가(설계변경)에 따른 내용변경

- 설계변경내용 : 건축계획(연면적, 건축물용도 등) 조경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등

2)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대지면적, 정비기반시설면적 변경

7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 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731-1911). 끝.